

②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 (이하 "분석평가"라 한다)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적극적 조치) 구청장은 성평등 정책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함에 있어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·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2장 분석평가의 실시

제6조(분석평가 대상) ① 구청장은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(이하 "대상 정책"

같음)

② ----- 성별영향평가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4조(적극적 조치) -----  
----- 성별영향평가-----  
----- 성별영향평가-----  
-----  
-----.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성별영향평가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## 제2장 성별영향평가의 실시

제6조(성별영향평가 대상) ① ---  
- 「성별영향평가법」-----  
-----  
- 성별영향평가의 -----  
-----

이라 한다)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.

1. ~ 4. (생략)
5. 제11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분석평가 대상으로 요청한 정책 및 사업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·규칙·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4.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7조(분석평가의 실시)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. 다만,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-----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요청한 -----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-----  
-----  
----- 성별영향평가 -----  
-----  
-----

제7조(성별영향평가의 실시) -----  
-----  
----- 성별영향평가 -----  
-----  
-----

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.

1.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: 조례·규칙심의회의 심의·의결 전

2. ~ 4. (생략)

제8조(분석평가의 고려사항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여야 한다.

1.·2. (생략)

3.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

4.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

제9조(분석평가서의 작성) 구청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10조(분석평가결과의 반영)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,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

-----  
-----.

1. -----  
-----  
조례·규칙심의회-----  
---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)  
-----  
----- 성별영향평가-----  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성별영향평가결과-----  
-----

4. ----- 성별영향평가-----  
-----

제9조(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) --  
- 성별영향평가를 -----  
----- 성별영향평가서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)  
----- 성별영향평가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영하여야 한다.

제11조(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등) ①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소관 정책에 대하여, 구청장은 통보받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3장 분석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

제12조(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2.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
3.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및 성인지 예산서의

-----.

제11조(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) ① -----  
----- 특정성별영향평가-----  
----- 성별영향평가의 -----  
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장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

제12조(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성별영향평가 -  
-----  
----- 마포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-----  
-----.

② -----  
-----.

1. 성별영향평가-----  
--
2. 성별영향평가-----  
-----
3. 성별영향평가결과-----  
-----

연계에 관한사항

4. (생략)

제1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

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분석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담당 과장, 사업부서 과장 중 1명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1. (생략)

2. 그 밖에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(생략)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분석평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.

제16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3.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

----- 관한 사항

4.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성별영향평가 -----  
-----.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성별영향평가 -----  
-----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 
-----  
----- 성별영향평가 -----  
-----.

제16조(위원의 해촉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-----  
- 부진하여 위원-----  
-----

제17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7조(수당 등) -----  
-----  
-- 수당과 -----  
-- . -----  
-----

제18조(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) ① 구청장은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 본청 복지교육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.

제18조(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) ① -- 성별영향평가를 -----  
-----  
-----

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② ----- 성별영향평가책임관-----  
-----

1. (생략)
2. 제7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
3.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4. 제10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, 성인지 예산서 및 기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 성별영향평가-----  
-----
3. ----- 성별영향평가서-----
4. ----- 성별영향평가-----  
-----

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

5. 제19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·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

제19조(분석평가 교육)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분석평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----

5. ----- 성별영향평가

-----

6. ----- 성별영향평가 -----

-----

---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

제19조(성별영향평가 교육) -----

--- 성별영향평가의 -----

----- 성

별영향평가에 -----

-----.

**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」  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**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**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**3. 미첨부 사유**

-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

**4. 작성자**

작성자 이름	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 송강미
연 락 처	02-3153-8922